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5년 3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영국 등 유럽에 체류했어도, 이제 헌혈 가능해진다

-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 시행(25.3.4) -
- 헌혈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 6천 명에 대해 헌혈 기회 제공할 것으로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4일(화)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하여 '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 변형 프리온에 감염된 육류섭취로 발병 추정,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233건 발생

** (영국) '80년~'96년 1개월 이상, '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유럽) '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 이러한 국내 기준은 '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 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되어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 미국은 vCJD 관련 헌혈 제한 규정을 '20년에 한 차례 완화한 후 '22년에 전면 폐지했으며, 호주('22)·캐나다('23)·뉴질랜드('24)·홍콩('24)·싱가포르('24) 등에서도 잇따라 관련 규정 삭제 등 완화

- 이에 국내 연구*(’22)에서 변종 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23.2월) 및 전문가 회의(’23.11월, ’24.5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24.7월, 8월)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국내 헌혈자 선별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22.6월~12월, 연세대)

** 혈액관리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로, 정부 및 의료계·법조계·학계 등 민간위원 15인 구성

- 이번 고시 개정은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 영국은 ’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는 ’01년까지

- 현재까지 유럽 전 지역 체류자가 아닌 영국(’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01년까지)에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고, 영국(’96년까지)은 3개월 이상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수혈받은 경우(’80년 이후)도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vCJD 위험국가 체류 관련 헌혈 제한 기준】

당초	변경
▶ ’80년~’96년까지 1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 ’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 ’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유럽국가 거주/방문/여행 ▶ ’80년 이후 영국, 프랑스에서 수혈	⇒ ▶ ’80년~’96년까지 3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 ’80년~’01년까지 5년 이상 프랑스, 아일랜드 거주/방문/여행 ▶ ’80년 이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수혈

-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에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와서 헌혈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 6천 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882. 혈액장기정책과. 2025. 3. 4.

II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위한 불가항력 분만사고 지원한도 상향 추진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4.)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 [24.8.30일 보도자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참조

■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시행령 제23조)
 -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으로 7월 1일부터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둘째,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이 완화된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을 기존 5백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개선하여 간이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한다. (시행령 제15조의2)

- 그 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의료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을 대강의 기준 없이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사항(2022.7.21. 선고, 2018헌바504)을 반영한 것이다.(시행령 제27조)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

-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또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의료사고 안전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만·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883. 의료기관정책과. 2025. 3. 4.

Ⅲ

건강 수준 및 노동 측면에서의 노인 연령 기준 논의

- 보건복지부,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8일(화) 15시 30분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서울시 용산구)에서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차례('25.2.7.(금), 2.26.(수)) 간담회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는 이기일 제1차관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보건의학적 관점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윤환 교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노화와 연령에 대해 논하며,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적일 수 있고, 정책 기준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또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인연령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고용 제도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 권정현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OECD, 2016)까지 높아졌음을 지적하였다.
- 다만,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 만에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적정 노인 연령 등을 토대로 향후 여러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914. 노인정책과. 2025. 3. 18.

IV

보건복지 상담, 수어·채팅·챗봇 전면 개편된 129 앱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언어·청각장애인을 수어영상상담, 스마트기기 제약 없이 가능 -
- 간단한 상담은 로그인 없는 웹채팅으로 전문상담사와 빠른 연결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은 365일 24시간 보건복지 챗봇으로 상담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31일(월)부터 국민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보건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9 보건복지부' 상담 모바일 앱(APP)을 11년 만에 개편한다고 밝혔다.

■ 국민은 개편된 129 보건복지부 앱을 통해 새로운 ▲ 수어영상상담 ▲ 24시간 챗봇상담 ▲ 웹채팅상담 ▲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2014년에 구축된 129 보건복지부 앱은 노후화되어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개편된 앱을 통해 언어·청각장애인은 스마트기기 제약 없이 수어영상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어상담사가 상담 중인 경우에는 상담 예약기능을 통해 대기하지 않고 수어영상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 카카오톡 미사용자나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은 새롭게 도입된 웹채팅 상담으로 로그인 없이 빠르게 전문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상담은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고도화되어 보다 빠른 상담사 연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건복지 관련 정책 문의는 365일 24시간 챗봇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서비스〉

구분	상담시간	대상	주요 개편 내용
수어영상상담	평일 09:00~18:00	언어·청각 장애인	- 스마트 기기 및 브라우저 호환성 강화되도록 수어영상상담서비스 개편 - 상담 예약기능 도입
채팅 상담	카카오톡	대국민	- 1:1 → 1:N 상담으로 민원인 상담연결 대기시간 단축
	웹채팅	카카오톡 미사용자	- 웹채팅상담 서비스 신설 - 로그인 없이 전문상담사와 빠른 연결
챗봇상담	365일 24시간	대국민	- 365일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 신설 - 단순반복 질의에 대한 답변 제공

- 김용규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이번 개편된 129 앱을 통해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보건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미 ‘129 보건복지부’ 앱을 사용 중인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신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www.129.go.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953. 보건복지상담센터. 2025. 3. 31.